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의  
장

제1795호 2023. 11. 6.(월)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2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7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2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3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7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 - 3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8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4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 - 4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4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8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5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8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8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9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6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9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5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6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6호 석남동 529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 70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54호 등록 공인 공고 ————— 7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67호 (가칭)신동구역 스마트시티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7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7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7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 81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72호

#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 또는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 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④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의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명단
4. 상정 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②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수당: 서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받아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단,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의 통합·폐지 등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 또는 6년 이상 연임하여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㉝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③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④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하고, 제2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⑥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⑦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⑧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서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8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9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0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1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2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3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4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5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6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7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8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9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0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1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②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③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④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⑦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⑧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⑨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㊱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

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⑨5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⑨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⑨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⑨8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⑨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⑩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⑩1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

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7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66조의9” 를 “법 제66조의11”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 을 “재난안전업무 담당 국장” 으로 한다.

제13조 중 “공무원” 을 “구의 공무원” 으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회의” 를 “위원회등의”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7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민간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분석
-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대책
-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 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도 등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보건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7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 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7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을 이용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정소식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78호

## 인천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5. 폭염 안전사고 예방대책
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재 시설
3. 그늘막
4. 승객 대기시설 에어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시설 수선,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
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3.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실시) 구청장은 구민에게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80호

###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대상은 서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사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81호

#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은 가족돌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교육과 문화·건강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와 서구민,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정의) ①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청년(Young Carer)"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생계활동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
-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기관·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해당국장 및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
3.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교육청 관계자
4. 청소년·청년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기관·단체의 관계자
5. 청소년·청년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의 학계 전문가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해 출석하는 경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8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82호

##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지역 내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감시·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다.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진동, 악취, 생태계 등) 오염·훼손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는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별 사업장을 출입하여 감시하는 행위
- 2.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3. 제1항의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

제4조(위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동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
- 2. 동장,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타 시·군·구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2.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구청장은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신고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8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8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 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고립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

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8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영업장소)” 를 “(영업장소 지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에 한정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항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_____ ( _____ m <sup>2</sup> )	
	영업을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사용기간 . . . ~ . .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우대사항 (해당 시책 및 서류 제출)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8조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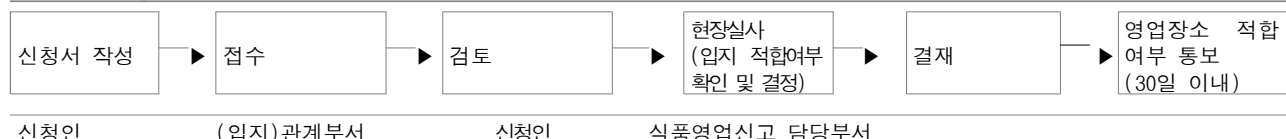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 신청 장소 계약서 및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

### 유의사항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처리절차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86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8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부과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 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제34조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29조 및 제34조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88호

##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위를 말한다” 를 “행위 뿐 아니라 붙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 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 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흡연예방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전 개최 결과에 따라 상금, 상패 또

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공모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5만원”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5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감사담당관, 미래기획실, 자치행정국” 을 “감사실, 홍보정책실, 기획재정국 및 행정안전문화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환경안전국” 을 “환경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복지문화국” 을 “복지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90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배” 를 각각 “5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91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18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61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11.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11-0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이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한림동 394-13	인천광역시 서구 백장로 261 (한림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양구인 복합을 지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90-11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63 (당하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작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두번째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1-4	인천광역시 서구 경림대로 611-1 (연희동)	20090710	계양산과 원미산사이 경령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경령이고개의 관치표기법인 &#x26;경령&#x26;명칭에서 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마천동 1028-15	인천광역시 서구 완창로 48 (마천동)	20081231	완창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5	인천광역시 서구 창리동 9-64	인천광역시 서구 창동로 185 (창리동)	20101111	창리대로 동쪽에 위치	
6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89	인천광역시 서구 가원산로 164 (대곡동)	20130730	가원산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 반영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53-12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31번안길 40-10 (오류동)	20090922	단봉로231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1-316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66-231 (백석동)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529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92 (가좌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53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90 (가좌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52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94 (가좌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11-06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열곡로 573-1 (가성동)	인천가성22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090922	친일열을 생신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열곡로 565 (가성동)	인천가성22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090922	친일열을 생신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열곡로 563 (가성동)	인천가성22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090922	친일열을 생신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열곡로 563-2 (가성동)	인천가성22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090922	친일열을 생신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대로 420 (십곡동)	인천가성22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110211	왕라강제자유구역의 국제적 상장을 열람	
6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대로 416 (십곡동)	인천가성22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110211	왕라강제자유구역의 국제적 상장을 열람	
7	인천광역시 서구 열곡로 583 (가성동)	인천가성22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090922	친일열을 생신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186호

## 석남동 529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석남동 529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칭: 석남동 529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
- 나. 면적: 9,167.3m<sup>2</sup>

###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미정
- 나. 준공예정일: 미정

###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명칭: 석남동 52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섬결)
- 나.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77번길 1, 3층(석남동)

##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가. 조합정관 변경

나. 조합원 변경(상속·매매 등으로 인한 변경 6인)

다. 조합장 선임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3-2254호

## 등록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인 등록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 공인 등록일 : 2023년 11월 6일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cm)	등록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청라3동통합민원전용3(인증기 종형)	기관장인	2.4 x 2.4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청라3동통합민원전용3(인증기 횡형)	기관장인	2.4 x 2.4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3	청라3동장인/통합민원전용3(인증기 종형)	기관장인	2.1 x 2.1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4	청라3동장인/통합민원전용3(인증기 횡형)	기관장인	2.1 x 2.1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5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가정1동통합민원전용4(인증기 종형)	기관장인	2.4 x 2.4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6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가정1동통합민원전용4(인증기 횡형)	기관장인	2.4 x 2.4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7	가정1동장인/통합민원전용4(인증기 종형)	기관장인	2.1 x 2.1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8	가정1동장인/통합민원전용4(인증기 횡형)	기관장인	2.1 x 2.1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3동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3동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3년 11월 6일	
청라3동장인/ 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3년 11월 6일	
청라3동장인/ 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1동통합민원전용4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1동통합민원전용4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3년 11월 6일	
가정1동장인/ 통합민원전용4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3년 11월 6일	
가정1동장인/ 통합민원전용4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2267호

## (가칭)신동구역 스마트시티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54-5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로 제안한 (가칭)신동구역 스마트시티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요

가. 구역명칭 : (가칭)신동구역 스마트시티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54-5번지 일원

다. 면 적 : 258,717.4m<sup>2</sup>

라. 시행기간 : 환지방식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 까지

###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가칭)신동구역 스마트시티개발사업조합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

### 3. 입안할 개발계획의 개요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비율 (%)	비고
합계	258,717.4	100.0	
주거용지	140,219.0	54.2	
공동주택용지	23,460.0	9.1	
단독주택용지	10,133.0	3.9	
준주거시설용지	106,626.0	41.2	
상업용지	8,627.0	3.3	
상업용지	8,627.0	3.3	
도시기반시설용지	109,871.4	42.5	
도로	39,435.4	15.2	
보행자전용도로	777.0	0.3	
공공공지	2,893.0	1.1	
주차장	1,822.0	0.7	2개소
공원	55,719.0	21.5	3개소
녹지	4,225.0	1.6	
공공청사	2,000.0	0.8	1개소
공공도서관	3,000.0	1.2	1개소

나.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 4.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 032-560-577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032-718-1555)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 공 램 의 견 서

사 업 명	(가칭)신동구역 스마트시티개발사업		
공람내용	(가칭)신동구역 스마트시티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의 견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3-2270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공 고 기 간 : 2023. 11. 6. ~ 2023. 11. 20.(15일간)
-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인천30마5323 등 12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2, FAX 032-560-2793)		

###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2)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인천30마5323	포텐사오토	김**	2023. 10. 10.
2	386나1267	BMW X4 xDrive20i xLine	하**	2023. 10. 13.
3	11노1514	투싼(TUCSON)	박**	2023. 10. 17.
4	248로9189	팔리세이드(PALISADE)	하**	2023. 10. 23.
5	150버4773	K3	정**	2023. 10. 24.
6	38가3302	그랜저(GRANDEUR)	배**	2023. 10. 25.
7	66도8799	제네시스(GENESIS)	최**	2023. 10. 25.
8	230조3465	Mercedes-Benz A250 4MATIC	하**	2023. 10. 25.
9	279고1466	Mercedes-Benz E 250	하**	2023. 10. 25.
10	69두5755	K9	노**	2023. 10. 30.
11	11고8091	Golf 2.0 TDI BMT	박**	2023. 10. 30.
12	60라9580	CLS350	김**	2023. 10. 3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3-2278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에 비치되었으며,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31, 1131-3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 명칭: 마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 도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금회		
중로	2	190	15	15	157	157	2,414.9	
소로	1	11	11	11	289	289	3,105	

#### ○ 완충녹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인천광역시 서구)	면적(m <sup>2</sup> )	비고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1131-3	647.8	

#### ○ 어린이공원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인천광역시 서구)	면적(m <sup>2</sup> )	비고
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1131	2,953.3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대표 한송희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609번길 23, 마전양우내안애퍼스트힐 경로당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4.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1178	도로	3,105.0	3,105.0	공	인천광역시 서구	
2	1179	도로	2,414.9	2,414.9	공	인천광역시 서구	
3	1131-3	공원	647.8	647.8	공	인천광역시 서구	완충녹지
4	1131	공원	2,953.3	2,953.3	공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합계			9121.0	9,121.0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금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 4층 도시계획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공 램 의 견 서

사업명	마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의 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